

u-City 통합운영센터의 제도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정의 및 위상을 중심으로 -

조 춘 만* · 김 정 훈**

Study on the Legal Establishment of u-City Management Center

Chun-Man Cho*, Jung-Hoon Kim**

요 약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이라고 함)」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고 함)는 u-City의 의미와 상징성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크며, 그 제도적 정착이 u-City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운영센터의 설치는 u-City가 일반도시와 구별되는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 u-City화 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시설,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프라 기반 등의 융복합화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핵심시설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핵심역할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센터의 기초 개념정의, 구조 및 운영방안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재정리와 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 마련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들을 정의와 위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성공적 운영센터구현을 향한 제도적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어 : 유비쿼터스, u-City, u-City 통합운영센터,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ABSTRACT :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u-City(ubiquitous city),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Law was enacted(March 3, 2008) to form the legal basis of u-City plan, construction and managements afterwards. Among u-City elements, the u-City Management Center has its own meaning and importance in roles which are crucial to the u-City developments, and its legal establishment is one of the core u-City realization factors. In spite of its crucial position for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연구위원(교신저자, junghkim@krihs.re.kr)

u-City, the legal arrangement of its basis concept, physical/systematic structures, and managerial finance sources and their standardizations are very imma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its overall problem issues and then to suggest the basic directions and enforcement strategies to form its legal basis.

Keywords : Ubiquitous City, u-City, u-City Management Center,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Law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기업도시, 혁신도시, 세종도시 등 국가주도의 신도시개발 및 광교, 동탄, 파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신도시개발 등 전국에 활발히 추진 중인 u-City¹⁾의 계획, 건설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이번 u-City법의 적기 마련은 전국 u-City건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시민이 모두 바라는 바람직한 성과와 혜택을 조기달성하기 위한 u-City의 계획, 건설 및 향후 운영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가운데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고 함)는 u-City에 부여하는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며 그 제도적 정착이 u-City 구현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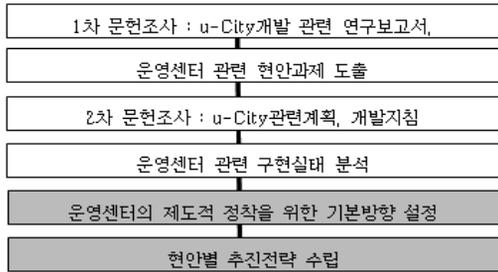
센터의 설치에 u-City가 일반도시와 구별되는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 u-City화 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도시내 다양한 시설,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프라기반 등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핵심시설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센터의 기초 개념정의, 구조 및 운영방안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재정리와 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들을 정의와 위상을 중심으로 통합 정리하였다. 또한 성공적 운영센터구현을 향한 제도적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1.2 연구의 방법론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먼저 1) 우리나라 u-City개발과 관련된 1차 문헌조사(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 등을 기반으로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제반 현안들을 통합 정리하고, 2) USP 등 관련 계획 및 관련지침

1) U-City 또는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함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



<그림 1> 연구의 수행체계

등의 2차 문헌조사를 통한 제반 현안별 운영센터의 구현실태를 분석한 후, 3) 운영센터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4) 그 실현을 위한 각 현안별 추진전략 제시로 구성된다.

1.3 기존 연구의 고찰

운영센터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는 크게 u-City와 특별한 관련성 없이 운영센터 자체의 구현에 관한 기초연구(김은정 외, 2007; 김은형, 2007; 김영수 외, 2008; 박응희 외 2008; 임규관 외, 2008), 그리고 u-City모형 또는 u-City개발계획의 구성요소로서 운영센터의 구현에 관한 연구(김선경, 2004; 박민우, 2007; 송석현, 2007)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운영센터 자체의 구현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김영수 외(2008)는 운영센터의 보안 방안에 관해, 임규관 외(2008)는 u-City인프라의 하나로서의 운영센터에 관한 정의와 위상에 관한 역할기능, 참조모델 및 플랫폼에 관한 구현방안을 제안하였다. 박응희 외(2008)는 운영센터를 관제방식, 통합형태 및 다기관 통합전산운영센터의 유형분류에 따라 운영센터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고, 김은형(2007)과 송석현(2007)은 운영센터를 하나의 독립

된 기능시설로서가 아니라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축운영중인 정보화사업 관련정보, 도시관리에 필요한 유관기관 정보 및 u-City개발에 의한 실시간 상황정보 등을 총체적으로 통합 또는 연계하는 도시통합운영체계의 개념을 기반으로 도시공간정보의 통합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운영센터를 u-City의 핵심적 기능요소로서 보다는, 단순히 인프라나 서버를 통합관리하는 시설로서의 부문별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향 등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센터는 먼저 u-City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개념정의 및 위상 규명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기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운영센터의 현안과제들을 정의와 위상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현황분석,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좀 더 튼튼한 제도적 기반마련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다.

2. 분석 : 현안과제 도출 및 구현실태 분석

운영센터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운영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연구자의 배경이 되는 세부 전공분야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8년에 근거법이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한 운영센터의 기본개념을 새로 정립하는 초기 개념도입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운영센터 관련 제반 문제점을 u-City관련 유일한 근거법으로서 u-City법과 기존 관련문헌들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의(definition)와 위상

(status)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각각의 현안 및 구현실태를 살펴보았다.

2.1 1차 문헌조사 : 현안과제 도출

2.1.1 운영센터의 정의

박용희 외(2008)는 u-City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u-City구현에 필요한 u-City서비스에 활용될 도시정보의 통합·연계방안의 필요에 따라, 기존 정보화 중심의 도시정보 통합 연계의 중요성 인식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제시를 통한 정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임규관 외(2008)는 u-City인프라를 운영센터, 플랫폼, Network 및 Device로 정의하고, 그 가운데 핵심에 해당하는 운영센터와 그 안에 플랫폼의 정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유일한 관련법으로서 u-City법에 의한 운영센터의 정의를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은 법 제2조 3항으로서, u-City서비스를 제공하거나 u-City 전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서 밖에는 그 정의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2.1.2 운영센터의 위상

u-City는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형 또는 시·군청의 관할구역²⁾내 기존 시가지정비형 등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법 8조). 다양한 개발유형마다 u-City, u-City사업구역³⁾, 지방자

치단체 관할구역의 상호관계 정립 후 그에 따른 운영센터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관련 현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City법은 u-City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즉,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다(법 제8조). 이 경우 ‘u-City’란 1)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2) u-City계획에 의한 개별 u-City사업구역을 지칭하는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입장정리가 요구된다.

둘째, 1)의 경우, 즉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u-City라고 볼 때, 개별 u-City사업에 의한 사업구역은 u-City가 아닌 차위의 명칭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운영센터가 u-City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시설로서의 의미를 삽입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는 어떤 위상관계를 가져야 하는가가 불명확하다. 또한 개별 u-City사업구역내 운영센터 설치의 원칙적으로 불가능한지 또한 의문이다.

셋째, 2)의 경우, 즉 개별 u-City사업구역을 u-City로 볼 경우, 운영센터를 u-City마다 설치할지 u-City계획의 공간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즉, 시·군)에만 둘것인지. 또 개별 u-City마다 도시를 관리운영할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관리운영 역할과의 위상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2.2 2차 문헌조사 : 현안별 구현실태 분석

2.2.1 운영센터의 정의

우선 운영센터의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2) u-City법은 u-City관련계획의 위계를 국가전체에 대해 수립하는 최상위의 u-City종합계획, 그 하위계획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시·군)별 u-City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내 다양한 u-City사업의 집행을 위한 u-City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음(법 4, 8, 13조).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계를 시·군청으로 한정함.

3) u-City사업구역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 개별 u-City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 u-City법에는 아직 구체적 명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는 명칭부여가 요구됨.

못하며, 이는 2008년 u-City법 제정이전에 수립된 계획인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성남판교(경기도, 성남시 외, 2005)의 경우는 ‘종합상황실’, 기타 사례지역들(경기도, 수원시 외, 2006; 대구광역시, 2007; 충청남도, 2008; 건설교통부 2006)은 ‘관계센터’ 및 ‘정보센터’의 개념으로 운영센터의 정의에 접근하고 있다. 기존 계획안들은 주로 운영센터의 정의에 대한 직접적 접근방식보다 ‘서비스 운영관리 시설’, ‘정보시스템 관리의 일원화 시설’, ‘도시정보의 적정배분 시설’ 등으로 기능

정의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아직까지 u-City에 대한 표준적 도시모델 제시가 미흡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2.2.2 운영센터의 위상

운영센터의 위상설정에 있어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상 상하위 또는 수평적 위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사안에 해당한다. u-City법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u-City로 보는 반면, 기존 계획사례들은 대부분 일정한 계획대상지만을 u-

<표 1> 계획·지침 문헌별 운영센터의 정의

대상지 ⁴⁾	운영센터의 정의
판교	- [종합상황실] 성남판교의 공공정보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중점 수행하는 Core
판교	- [통합정보관계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극대화하기위해 U-City 정보시스템 관리를 일원화한 시설
대구	- [도시통합관계센터]시공을 초월한 다양한 도시정보를 적절히 분류 배분하여 u-대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의 선별 및 교통정리를 위한 필수시설
홍천	- [지역정보통합센터] 안정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우수한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전산 및 각종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관계 시설
세종	- [도시통합정보센터] 정보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창고 역할하는 정보 Hub

<표 2> 계획·지침 문헌별 운영센터의 위상

대상지	운영센터의 위상
판교	- 계획초기 u-City를 개별 사업구역으로 보는 경향이었으나, 점차 성남시 전체를 하나의 u-City로 보면서 기존 성남의 ITS센터의 확장개념으로서의 종합상황실 설치계획
판교	- 판교신도시를 개별 u-City로 보고 신도시 내부에 단일센터 설치
대구	- 대구광역시 전체를 u-City로 하되 u-직접지구 선정하여 집중개발. 센터는 대구시 전체를 커버하며 u-직접지구와 센터의 역할관계는 계획상 불분명함 - 대구시의 기존 행정정보센터를 활용해 센터를 운영하며, 향후 서비스 개발로 기능을 추가하도록 할 예정임
홍천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홍천 일부지역)를 단일 u-City로 보고 내부에 단일센터 설치
세종	- 세종신도시를 단일 u-City로 보고 내부에 단일센터 설치

4) 출처: 성남판교(경기도, 성남시 외, 2006), 판교(경기도, 수원시 외, 2006), 대구(대구광역시, 2007), 홍성(충청남도, 2008), 세종시(건설교통부 2006)

City로 보아 이에 대한 합일점 마련이 요구된다. 성남판교(경기도, 성남시 외, 2005)는 u-City법과 가장 근접하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u-City로 보았고, 기타 도시들은 계획대상지만 u-City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대구시(대구광역시, 2007)의 경우는 관할구역내 시설과 활동이 특히 집적된 일정구역을 선정하여 u-City사업구역을 시범 개발코자 함이 특이하다.

실제 기존 계획사례들을 살펴보면, 운영센터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상관계를 각자 명확한 기능부여에 따른 상하위 또는 수평적 협력관계 등 객관적 내용제시가 부재하다. 다만 통신망, u-City서비스 모형제시 등에 있어 상호간 협력관계 또는 시스템간 연계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3. 운영센터 정의 및 위상의 제도화 전략

3.1 운영센터 제도화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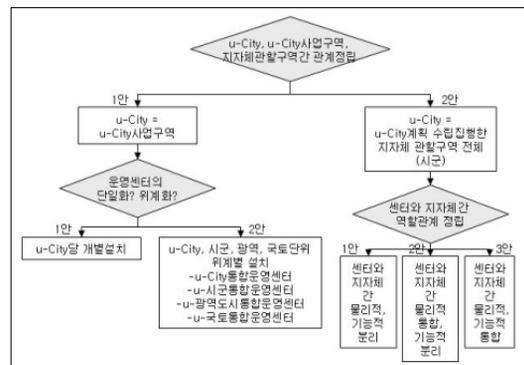
첫째, 운영센터의 정의에 앞서 u-City, u-City사업구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간 관계정립이 제일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u-City법은 u-City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u-City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동탄, 광교, 파주 등 대부분의 택지 개발에 의한 신도시형 u-City사례의 경우 법제도에 기반한 u-City로 명명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도시형 u-City개발사례의 경우 일정한 준비기간을 제시하여 그 기간안에

법제도에서 규정한 u-City로서의 조건을 향후 충족시키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어 기존의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형 u-City도 법제도 기반의 u-City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u-City를 개별 u-City사업구역으로 볼 경우, 운영센터를 위계화 또는 단일화하여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단일화할 경우 1개 u-City당 개별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반면 위계화할 경우는 u-City, u-시군, u-광역, u-국토 등으로 위계를 두어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u-City를 u-City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로 볼 경우, 운영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일정한 위상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운영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물리적 연계 - 기능적 분리, 물리적 분리 - 기능적 연계 또는 물리적, 기능적 완전통합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가능하다.

이상의 운영센터 제도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u-City통합운영센터 제도화의 기본방향

3.2 운영센터 제도화의 추진전략

3.2.1 운영센터의 정의

첫째, 명확한 정의수립을 위한 첫 기반으로서 정확한 표준명칭 수립이 요구된다. 법 2조와 시행령 4조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로 통용하는 것으로 제도화할 경우, 법규정에 의한 본 시설물의 위상, 기능, 입지, 구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 규정내용 세부적 제시가 요구됨

둘째, 운영센터의 유용한 표준정의 제시를 위해서는 먼저 u-City에 대한 표준적 도시모델 제시가 요구된다. 서비스운영 시설, 정보시스템관리 및 정보배분 시설, 기반시설 실시간 관리시설 등 관련 계획안이나 연구 등에 제시된 운영센터의 다양한 정의는 u-City 자체의 표준정의를 미흡한데서 비롯된다. u-City 자체의 표준정부는 기존 도시모델과의 근본적 차별성을 제시하는데서 출발해야 하며, u-City법 자체가 도시개발이나 정비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 등과 병행해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 융합된 도시개발 또는 정비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냐가 u-City 표준모형 제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u-City법 제3조 참조).

3.2.1 운영센터의 위상

첫째, ‘유비쿼터스도시’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구역’의 개념과 공간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향후 계획, 개발,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u-City법 8조를 근거로 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시·군)의 관할구역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관할구역내 일부지역을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구역’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u-City법에 의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행된 대부분의 지자체내 신도시형 또는 기존도시 정비형 u-City사업의 경우도 일정 경과규정을 통해 u-City내에 포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기존 유사 u-City사업지를 포함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이 제시한 바대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한후 해당 시군이 법적 기준을 만족할 경우 ‘유비쿼터스도시’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을 원치 않을 경우, 기존의 유사 u-City사업지가 법이 제시한 일정 수준을 만족할 경우 단독으로 u-City로 인정하는 규정이 예외적이면서 한시적으로 인정되어야 u-City법 재정의 전후 u-City건설사업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지역단위기구(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와 지자체 관할구역내 계획·개발하는 u-City별 운영센터와의 상호관계를 법제도적으로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정, 중앙행정기관의 지역단위기구는 해당 행정관리에 관련되며, u-City 통합운영센터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구역’ 마다 설치할 경우 이들 삼자간 역할관계가 제도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에 있다.

셋째, 운영센터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구역’마다 설치할 것인지, ITS등의 사례와 유사하게 사업구역, 시군, 광역 및 국토 단위로 위계적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사업구역 마다 ‘개발화’ 또는 행정단위의 위계를 고려한 ‘위계

화'의 방향으로 운영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에 따른 운영센터 자체의 기능정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하여야한다.

넷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구역'을 1) 신도시형, 2) 기존도시정비형, 3) 테스트베드형, 4) 특별법 추진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구역정의 및 사업의 내용정의 등에 요구된다. 신도시형은 대부분 기존에 설치중인 u-City의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며, 기존도시정비형은 관련법에 의한 도시의 기능과 미관향상을 위한 각종 도시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u-City개발유형에 해당한다. 테스트베드형은 대구의 경우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의 지능화 효과가 가장 크고 인구, 도시기능 및 정보화가 매우 밀집적으로 밀집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u-City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특별법 추진형은 세종시와 같이 신도시가 특별법에 의해 지자체 관할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의 각 현안별 추진전략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u-City법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들을 통합 정리하고, 성공적 운영센터구현을 향한 제도적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운영센터에 관한 법제도 정비의 문제의 복잡성은 운영센터가 단일기능 수행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통합성'이 매우 강조된 u-City기반 시설이라는데 있다. u-City의 핵심시설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다양한 도시정보의 통합 시설, u-City기반시설(53개의 지능화시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일반 및 특화된 다양한 u-City서비스의 개발 및 관리운영 시설로서의 '통합성'을 종합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센터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는 매우 장기간에 걸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그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위한 장기적 단계별 구현전략 역시 중요하다.

결국, u-City는 그 출발이 과거 정보통신

<표 3> u-City통합운영센터의 정의 및 위상관련 현안별 추진전략 종합

현 안	현 안 별 추 진 전 략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정의수립을 위해 정확한 표준명칭 수립 • u-City에 대한 표준적 도시모델 제시
위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비쿼터스도시'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구역'의 개념과 공간영역 구분 •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지역단위기구, u-City별 운영센터와의 상호관계 법제화 • 운영센터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구역'마다 또는 시군, 광역 및 국토 단위로 위계화 정책결정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구역'을 1) 신도시형, 2) 기존도시정비형, 3) 테스트베드형, 4) 특별법 추진형으로 구분

관련분야에 의한 첨단융복합기술 개발 및 적용의 좋은 응용분야로서 출발했다면, 이제는 도시개발분야와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의 도시모델을 제안하는 희망과 기회의 차세대 융복합기술개발 분야로 승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u-City를 구성하는 중핵적 필수 구성요소로서의 운영센터는 그 시대가 u-City에 요구하는 역할과 일맥상통하여 변모해가게 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07첨단도시 A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07 High Tech A01) from High tech Urban Development Program fund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of Korean government.

참고문헌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6. “성남판교 u-City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2006. “광교 신도시 u-City 전략계획(USP)”.

김영수·박석천(A). 2008. “u-City 통합운영센터의 보안 위협 요소 분석 및 보호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9

권 제1호. pp.129-132.

김영수·박석천(B). 2008. “u-City 통합운영센터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정보과학회지 제26권 제8호, pp.32-41.

김은정·이정환. 2007. “u-City 구축 전략 : u-City 방법론 및 미들웨어”.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11권 제3호. pp.34-38.

김은형. 2007. “u-City 도시통합운영체계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연구”. 한국GIS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43-50.

김정훈·조춘만. 2007. “유비쿼터스시대를 대비한 u-City계획체계제정방안”, 한국GIS학회지 16(1).

김정훈·조춘만. 2006. “유시티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4): pp.1-10.

대구광역시. 2007. “u-대구 마스터플랜”.

박민우. 2007. “유시티 구현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 국토, Vol.307. pp.50-58.

박응희·정우수. 2008. “u-City내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분류”. 전자부품연구원(KETI) 연구보고서.

송재명 외, 2007, “인천자유구역 u-City구축계획”. 정보과학회지 제23권 제11호, pp.65-69.

부산광역시, 2008, “u-city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http://www.busan.go.kr>>

인천경제자유구역, 2008, “u-City홍보 홈페이지”, <<http://ucity.ifez.go.kr/>>

임규관·김지선, 2008. “u-City 인프라로서의 u-City 운영센터 및 플랫폼”. 정보통신연구진흥원(TTA) 저널 2007권 112호, pp.60-66.

충청남도. 2008.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USP”.

파주시. 2005. “파주 u-City ISP”.

한국정보사회진흥원(TTA). 2008. “u-City IT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V1.0”. pp.111-135.

한국토지공사. 2007. “u-City 적용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

접수일 (2008년 11월 28일)
 최종수정일 (2009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2009년 4월 3일)